

□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,

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, 방한일 위원님, 김선태 위원님,
양경모 위원님, 이연희 위원님, 이철수 위원님, 정병인 위원님 !

-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
-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「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본 조례안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센터·협의회 설치하고,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행하고,
- 기존 표기를 조례의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조례안 제8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·운영,
제9조 협의회 설치, 제10조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
제11조 사무의 위탁, 제12조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안 제2조, 제4조는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띄어쓰기 표기를 바로 잡았습니다.

□ 이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.

○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○ 금번 부의안건은 해당 조례에 대한 도민의 편익과 이해 증진을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2. 12. 5.

여성가족정책관 홍 은 아